

##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
------	------

1. 신청인 (양도자)	① 성명	② 생년월일
	③ 주소  (전화번호 : )	

### 2. 장기임대주택(양도주택)

④ 소재지			
⑤ 주택면적	m <sup>2</sup>	⑥ 토지면적	m <sup>2</sup>
⑦ 취득일자	년 월 일	⑧ 양도일자	년 월 일
⑨ 세법상 사업자등록일	⑩ 「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」상 사업자등록일		

### 3. 장기임대주택 임대내역

구 분	임차인		임대기간			⑩ 임대개시일 당 시 기준시가합 계액
	⑪ 성명	⑫ 생년월일	⑬ 개시일	⑭ 종료일	⑮ 기간	
최 초 임대						
2회 임대						
3회 임대						
계						

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가산할 추가공제율	%
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대리인

(서명 또는 인)

(관리번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	-----------

신고인 제출서류	1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2.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.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·주민등록증 사본 1부·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 중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.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	

작성 방법

- ⑮ 기간란: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 기간을 적습니다.
- ⑯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합계액란: 임대를 개시한 날 당시 임대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적습니다.
- 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가산할 추가공제율란: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의 추가공제율을 적습니다.

임대기간	추가공제율
6년 이상 7년 미만	2%
7년 이상 8년 미만	4%
8년 이상 9년 미만	6%
9년 이상 10년 미만	8%
10년 이상	10%

4. ■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.